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

제안자 : 국토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	2206866	민홍철의원 등 12인	'24.12.26.	상정	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2.18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1.)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	2209984	북기왕의원 등 10인	'25.4.22.	상정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8.21.)
				소위 심사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5.9.1.)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9. 25.)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,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54제2항).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과속방지시설 등”을 “과속방지시설, 방호울타리 등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보도의 설치 기준, 구조 등”을 “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,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기준, 종류 등”으로 한다.

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도로의 부속물”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시선유도표지, 중앙분리대, <u>과속방지시설 등</u> 도로안전시설	나. ----- --- <u>과속방지시설, 방호울타리 등</u> -----
다. ~ 바. (생략)	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
3. ~ 9. (생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제54조(보도의 설치 및 관리) ① (생략)	제54조(보도의 설치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/u>
<u>② 보도의 설치 기준, 구조 등</u>	<u>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</u>
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.	<u>기준,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 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기준, 종류 등</u> 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